



제 907 호

2010년 2월 26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훈령 제2010- 25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원경찰복무규정 전부개정규정 1
- 훈령 제2010- 258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원경찰징계규정 전부개정규정 7

공 고

- 공고 제2010- 284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10
- 공고 제2010- 29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운연동 소1-3호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11
- 공고 제2010- 293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16
- 공고 제2010- 29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
- 공고 제2010- 30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2-6호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24
- 공고 제2010- 310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31
- 공고 제2010- 315호 『남동구 20년사』 ‘인물’ 편 주민 열람 공고 32

고 시

- 고시 제2010- 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운연동 소 1-2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44
- 고시 제2010- 10호 통·반 구역조정 결정고시 53
- 고시 제2010- 1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구월동 소3-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비관리청)고시 56

회 람								
----------------	--	--	--	--	--	--	--	--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청원경찰복무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10년 2월 26일

남동구 훈령 제25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원경찰복무규정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청원경찰복무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원경찰 복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원경찰의 복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복무자세

제3조(성실근무) 청원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청사 방호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제4조(기강확립)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5조(용모 및 복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등) 청원경찰이 직무상 행하는 보고 및 통보는 신속, 정확, 간결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휴대) 청원경찰은 근무 중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3장 근무 및 감독

제8조(근무구분 및 시간) ①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8:00~익일 09: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상사태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구분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근무구역) ① 근무구역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구 본청 및 부속건물 내외의 경비에 필요한 구역에 한한다.
② 비상사태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근무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① 근무감독은 구청장의 명령을 받아 주간에는 총무과장이,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청원경찰(이하 “근무자”라 한다)이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1일전까지 근무감독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와 근무일지에 사유를 기재하고 근무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신고 및 인계인수) ① 근무자는 반장 또는 조장의 인솔하에 근무개시 30분전에 근무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근무자와 후근무자는 근무교대시 지시사항 및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반장은 근무사항을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한 후 매일 오전 10시까지 총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 익일 오전 10시까지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반장 및 조장의 임무)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장 및 조원의 지휘통솔과 단결도모
2. 근무자의 일일명령 및 근무일지 작성
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
4.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유무 파악 보고
5.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사항

② 조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해당 근무조의 지휘, 통솔 및 근무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3조(근무자의 일반업무)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법, 방호, 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시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일지에 순찰자의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민원인을 가장한 잡상인 및 불순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합민원실 이외에 사무실을 출입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공익을 명목으로 한 단체 등의 구내 상행위를 통제 단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무과장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단속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각종 물품의 반출, 반입시에는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고,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확인을 받고 반출하여야 한다.
5. 관용차량의 출입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고, 특히 근무시간 이외의 관용차량 통행에 대하여는 당직사령의 확인을 받아 출입시켜야 한다.
6. 청사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계도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사태시의 임무) ① 근무자는 불순분자나 그 밖에 난동자 등이 침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황보고시 주간에는 총무과장,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경비구역 내 중요시설의 경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근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조치를 한 후, 지휘계통의 지시를 받아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비치부책 등) 청원경찰 사무실에는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근무일지
3.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
4. 경비구역 배치도
5. 순찰표
6. 무기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
7. 지급장비 관리대장
8. 그 밖에 청원경찰 운영상 필요한 부책

제4장 보칙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현행법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높이하고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원경찰복무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 개발제한구역 감시원과 도로보안원 관련 규정을 정비
- 근무일지 관련 서식을 정비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청원경찰징계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10년 2월 26일

남동구 훈령 제258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원경찰징계규정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청원경찰징계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계의결기관) 청원경찰의 징계의결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

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이 관련되거나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에 관련된 자의 징계는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4조(징계처분) 구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현행법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높이하고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원경찰징계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 징계기준에 관한 별표를 삭제함.
 - 징계의 종류를 파면, 감봉 및 견책으로 규정
 - 징계의 수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284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10. 3. 8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0. 2. 22 ~ 2010. 3. 8

2. 대상 자동차

신 청 대 상 차 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 명	사용본거지			
86누3916	김태수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인천지방법원 (2001카단14722)	오재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453-2941)

2010. 2.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29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운연동 소1-3호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남동구 고시 제2007-38호(2007. 7. 6)로 시설결정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운연동 소1-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24) 및 도시개발과(☎032-453-299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당해 도로개설 시행구간 내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2. 26.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 남동구 운연동 286-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설의 종류			사 업 명
구 분	노선 번호	규 모	
도 로	소로 1-3호선	폭원(B)= 4m, 연장(L)=179m	운연동 순환도로(소1-3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88(만수동 1008번지)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0.12.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용지 조서” 및 “지장물 조서” 참조

6.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용지 조서” 및 “지장물 조서” 참조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용 지 조 서

운연동 순환도로 (소1-3호선) 개설공사

일련	소 재 지		지목	면 적 (M2)			공 유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번호	동	지 번		공 부	편 입	잔 여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운연	284-5	대	74	74	-	-	서 호 근	운연동 284-2			
2	운연	283-13	대	81	81	-	-	송 양 순	운연동 283-2			
3	운연	286-13	대	75	75	-	-	이 수 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2-10			
4	운연	290-6	대	54	54	-	-	이 창 덕	운연동 290-2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가압류
5	운연	290-5	대	170	170	-	-	김 광 진	운연동 290-1			
6	운연	293-2	전	82	82	-	-	이 수 영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04-9			
합 계		6필지		536	536	-						

지 장 물 조 서

운연동 순환도로 (소1-3호선)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장 물 면 적(M2)			구 조	용 도	소 유 자		비 고 (당초지번)
	동 명	지 번	편 입	잔 여	계			주 소	성 명	
1	운연동	284-5	16.26	2.17	18.43	세멘벽돌,기와	주택	운연동 284-2	서 호근	
			1.67	21.08	22.75	브럭,기와	주택			
			7.79	-	7.79	브럭,기와	욕실			
			-	8.82	8.82	브럭,스레트	창고			
			-	23.70	23.70	브럭,기와	창고			
			-	69.36	69.36	브럭,기와	주택			
			-	13.11	13.11	브럭,스레트	창고			
			-	13.63	13.63	목조,라이트	창고			
			-	4.84	4.84	브럭,스레트	창고			
2	운연동	283-8	10.15	-	10.15	브럭,스레트	창고	운연동 283-3	서 호영	283-3
		283-13	15.05	2.61	18.90	목재,라이트	창고			
			3.54	-	3.72	브럭,스레트	창고			
			14.88	56.03	70.91	브럭,스레트	주택			
			2.00	12.47	14.47	목재,스레트	통로			
			-	3.61	3.61	샷시	주택			
			-	13.76	13.76	브럭,스레트	창고			

3	운연동	286-10	-	-	4.16	쇠파이프,목재	세면대	운연동 286-3	박 동 순	286-3
		286-13				편입:양철판담장(당초L=21.1M,추가L=4.4M)				
						컨테이너-1식(추가,3.5*3.5),관정-1식(당초)				
4	운연동	290-4	-	-	6.75	샌드위치패널	창고	운연동 292-2	이 창 덕	292-2
		290-6	4.85	2.17	7.02	브럭,스레트	창고			
			21.55	44.19	65.74	적벽돌,스라브	주택			
			6.83	-	12.00	브럭,스레트	창고			
			-	6.84	6.84	브럭,스레트	창고			
5	운연동	290	3.83	6.96	10.79	적벽돌,스라브	주택	운연동 290-1	김 광 진	289-1
		290-3	29.80	48.54	78.34	적벽돌,스라브	주택			290-1
			4.20	-	4.20	알루미늄샷시	주택			
			9.18	0.98	12.24	브럭,샌드위치패널	창고			
			-	3.34	8.39	세멘벽돌,스레트	창고			
			-	1.60	1.60	적벽돌,스라브	창고			
6	운연동	293-1	36.71	206.64	248.52	샌드위치패널,스레트	공장	운연동 252-1	이 성 모	293
		293-2	-	-	342	목재,양철판	창고			
			1.39	3.02	441	목재,양철판	창고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293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37조 규정 위반(시설물전부멸실)한 아래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75조 규정을 적용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기간내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주소지 불명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 02.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공고기간 : 2010.02.24 ~ 2010.03.10(15일간)
3.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업주명	소 재 지	위반사항	행정처분일
일반	구월1-648	정원한정식	전재홍	구월동 1173-4	시설물전부멸실	2010.02.24
일반	구월1-973	미강	백미숙	구월동 1455 7층	시설물전부멸실	2010.02.24
일반	구월4-32	삼보식당	김태숙	구월동 1286-9	시설물전부멸실	2010.02.24

4.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식품위생법 제75조)
5. 행정처분일 : 2010.02.24
6.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멸실(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37조 제4항)
7.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37조 제4항, 제7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8. 청 문 일 : 2010.01.18(월)
9. 공시송달 청문일 : 2010.02.22(월)

10.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1.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2)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29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사무와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요율 및 별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신고와 변경신고 및 신고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 신설 (안 별표 1)
-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 신설 (안 별표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수수료 규정과 중복되는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액(별표 2)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32-453-2363, FAX : 032-453-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붙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사무와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요율 및 별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신고와 변경신고 및 신고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 신설 (안 별표 1)
-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 신설 (안 별표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수수료 규정과 중복되는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액(별표 2)을 삭제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영화업 신고사무 이관 협조요청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 기타 수수료 원가분석 조사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2]”를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로 한다.

별표 1의 2. 문화공보관계란에 제28목부터 제32목 및 (4)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란 다음에 8. 농업관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문화공보관계			
(28)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신고	1건	20,000원	
(29)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0)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31)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1건	20,000원	
(32)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농업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10-30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2-6호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2-6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22) 및 도시개발과(☎032-453-299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당해 도로개설 시행구간 내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2. 26.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 남동구 고잔동 372-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설의 종류			사 업 명
구 분	노선 번호	규 모	
도 로	소로 2-6호선	폭원(B)= 8m, 연장(L)=124.86m	고잔동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88(만수동 1008번지)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0.12.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용지 조서” 및 “지장물 조서” 참조

6.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용지 조서” 및 “지장물 조서” 참조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토지 집계표

소재지: 남동구 고잔동

구 분	사 유 지				국 유 지				합 계				비 고
	필지수	공부	편입 면적	잔여 면적	필지수	공부	편입 면적	잔여 면적	필지수	공부	편입 면적	잔여 면적	
도	1	13	13	0	2	3,895	39	3,856	3	3,908	52	3,856	
전	2	166	166	0					2	166	166	0	
답	1	447	447	0					1	447	447	0	
대	3	418	418	0					3	418	418	0	
임	1	50	50	0					1	50	50	0	
합 계	8	1,094	1,094	0	2	3,895	39	3,856	10	4,989	1,133	3,856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편입면적			잔여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도로내	도로외	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고잔동	362-12	도	2	2	0	2	0	국(건설부)				

2	고잔동	359-17	도	13	13	0	13	0	인천 남동구 고잔동 356-1	오원제			
3	고잔동	360-2	대	2	2	0	2	0	당진군 고대면 장항리 331	임한규(1/2) 외2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1207-13 인천 남동구 구월동1219-4	김순애 임종명	
4	고잔동	359-16	대	128	128	0	128	0	인천 남동구 고잔동 201	윤수			
5	고잔동	360-3	대	288	288	0	288	0	당진군 고대면 장항리 331	임한규(1/2) 외2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1207-13 인천 남동구 구월동1219-4	김순애 임종명	
6	고잔동	354-3	임	50	50	0	50	0	인천 남동구 고잔동 257-48	승일자동차공업(주)			
7	고잔동	353-3	전	59	59	0	59	0	인천 남동구 고잔동 257-48	승일자동차공업(주)			
8	고잔동	586-2	도	3,893	37	0	37	3,856	국(건설부)				
9	고잔동	361-3	전	107	107	0	107	0	인천 남동구 고잔동 339-3	김병수			
10	고잔동	372-47	답	447	447	0	447	0	인천 남동구 고잔동 371 3층	오영애			
계				4,989	1,133	0	1,133	3,856					

지 장 물 조 서(총괄_번호순)

고잔동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지장물조서)

조사 번호	소 재 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면 적 (㎡)			단위	물건소유자		비 고
	동명	지번			전체	편입	잔여		성명	주 소	
1	고잔동	359-16	천막	(6.0+6.7)÷2×4.1	26.00	26.00		㎡	황중호	남동구 고잔동 359-1	
			옹벽	H=0.7M	4.90	4.90		m			
			함석웬스	H=3.0M	7.40	7.40		m			
			수도계량기		1.00	1.00		EA			
			함석+ 그물망웬스	H=2.0M	2.90	2.90		m			
			벽돌담	H=1.8M	3.10	3.10		m			
			간판		1.00	1.00		EA			
			함석+ 그물망웬스	H=2.0M	17.30	17.30		m			
			함석웬스	H=3.0M	3.20	3.20		m			
			목재웬스	H=1.0M	7.40	7.40		m			
			함석웬스	H=1.0M	3.20	3.20		m			
			함석웬스	H=3.0M	3.10	3.10		m			

			함석+ 그물망웬스	H=3.0M H=2.0M	22.10	22.10		m			
			CON'C포장		249.45	249.45		m²			
2	고잔동	360-3	조립식	10.0×4.0	40	40		m²	이강락	남동구 고잔동 360	
			조립식	2.0×2.4	4.8	4.8		m²			
			함석웬스	H=2.1M	2.8	2.8		m			
			함석출입문	H=1.8M	8	8		m			
			함석웬스	H=2.1M	8.1	8.1		m			
			함석웬스	H=5.0M	50.5	50.5		m			
			간판		1	1		EA			
			옹벽	H=6.5M	1.5	1.5		m			
			CON'C포장		752.13	752.13		m²			
3	고잔동	361-3	수도계량기		1	1		EA	김병수	남동구 고잔동 339-3	
4	고잔동	372-47	컨테이너 (2층)	4.0×3.0	12	12		m²	대산산업	남동구 고잔동 350-1	
				3.5×2.0	7	7		m²			
5	고잔동	372-47	메쉬웬스	H=1.6M	53.5	53.5		m	오영애	남동구 고잔동 371 3층	
			메쉬웬스 (출입문)	H=1.6M	4	4		m			

			그물망웁스	H=1.8M	7.9	7.9		m			
			사과나무		26	26		주			임목 조서 참조
			감나무		11	11		주			

고잔동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영업권조서)

조사 번호	소 재 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면 적 (㎡)			단위	소유자		비 고
	동명	지번			전체	편입	잔여		성명	주 소	
1	고잔동	360	계량대	6.0×2.6	1	1		EA	대웅비철산업		
			컨테이너	6.0×3.0	18	18		㎡			
			컨테이너	4.0×3.0	12	12		㎡			
2	고잔동	359-1	계량대	6.3×2.7 (30TON)	1	1		EA	성우자원		
			컨테이너	6.0×3.0	18	18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310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의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전처분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사유:수취인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0. 03. 18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4. 공 고 기 간 : 2010.02.26 ~ 2010.03.17(20일간)
5.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업주명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간석3-930	올인	김미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3	사업자등록 폐업	영 업 신 고 사 항 직권말소

6. 고 지 사 항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2010.03.17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될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 453-2622

2010. 02.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315호

『남동구 20년사』 ‘인물’ 편 주민 열람 공고

개청 20주년을 맞아 남동구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현재의 발전상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 최초의 구사(區史)『남동구 20년사』를 발간함에 따라 ‘인물’편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주민에게 열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 2. 2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열람기간 : 2010. 2. 26 ~ 3. 7(10일간)
2. 열람내용 : 『남동구 20년사』 중 ‘남동구 인물’ 편
※ 작고한 인물 중심 편찬
3. 의견제출

이 편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10일까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문화홍보실장)에게 서면이나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 남동구청 문화홍보실 / ☎ 453-2170, FAX 453-2139)

가. 편찬(안) 오류사항 정정

나. 일반인이 인정할 수 있는 남동구 주요인사 중 누락자(작고한 인물 기준)

다. 기타 참고사항

남동구 인물

<내국인>

공원석(孔元錫 **미상**) 1910년부터 1920년까지 남동면 서기를 지냈으며, 1935년 남동면협(南洞面協) 의원에 선출되었다.

길영희(吉英義 1900~1984) 평북 희천(熙川) 태생으로 1918년 평양고보를 졸업하고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1919년 3·1만세운동 때 학생 대표로 참가하였다가 검거되어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고 학적을 박탈당했다. 24세에 다시 배재고보 4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했다. 이어 일본 히로시마(廣島)고등사범학교를 나와 배재고보와 경신학교 교사를 지냈다.

안변(安邊) 개간사업 민립농과대학 설립 계획을 세우고, 1936년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선생으로부터 민족의 장래에 관한 교화를 받고 인천 만수동에 후생농장(厚生農場)을 열었다. 경신중학교를 사임하고 후생농장에 귀농하여 8년간 농업 입국의 투지를 펴 나갔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인천 유지들의 추대로 인천중학교 교장에 취임하고 이후 민족교육 수립에 전력을 기울였다. 제물포고등학교를 병설하고 교장에 취임하여 무감독 시험제 등을 창안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5년 일찍 정년퇴임을 하고 자택에 대성학원(大成學園)을 설립하여 경영하였고, 1967년 충남 예산에 가루실농민학원을 설립하고 생애를 마칠 때까지 이끌어 갔다. 그는 인천 교육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김명동(金命童 **미상**) 1924년 11월 이재동(李在東)과 구월리에 보급강습소(普及講習所)라는 사설 교육시설을 세우고 주야반 30여 명의 아동들을 지도하였다.

김용산(金用山 1920~?) 소래면 대야리(大也里 시흥시출신?) 출신이다. 1944년 일본 도쿄의 요시다마사상공학교(攻玉社商工學校) 토목과 재학중 경상북도 선산 출신의 김중권(金鍾權), 경상남도 거창 출신의 하영길(河永吉) 등 한국인 학생들과 일제의 차별 대우 철폐, 독립 봉기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전개되는 독립 운동에 고무되어 도쿄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열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유학생들을 동지로 포섭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이 일본 경찰에 탐지되어 1944년 6월 19일 체포되었고, 8월 21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도쿄 형사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極東建設株式會社 사장과 화재 사건이 있었던 대연각 호텔 사장이었다.

김장아(金粧牙 **미상**) 고잔리 유지로서 1924년 고잔리에 학교가 없어 아동들이 인근 문학면이나 소래면으로 통학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습소 개설을 추진하고 모금운동을 벌인 독지가로 알려졌다.

김재로(金在魯 1682~1759) 그의 자는 중례(仲禮), 호는 청사(淸沙)로 숙종 28년(1702) 진사가 되고 숙종 36년(1710) 춘당대문과(春塘臺文科)에 급제하여 겸설서(兼說書)를 시작으로 관직에 나아간 후 지평(持平), 수찬(修撰), 동부승지(同副承知)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전라도 균전사(均田使)를 거쳐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오르고 부제학, 대사간, 우의정, 좌의정 등 내외 주요 관직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경종 2년(1722) 신임사화(辛壬士禍)때 문외출송(門外黜送)되어 울산에 귀양을 갔으나 영조 즉위 후에 풀려서 대사간으로 재등용되었다. 영조 3년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다시 파직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 있을 때 실록도청 당상을 겸직하여 『경종수정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때에는 주청사(奏請使)로 청나라에 가서 『명사(明史)』를 가져오기도 했다.

김재로의 관직 생활은 절반이 대신(大臣)의 지위에 있었으며 노론(老論)의 선봉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시호로 충정(忠靖)을 받았으며 영조묘정(英祖廟庭)에 배향되었다. 문집으로는 『본말록(本末錄)』과 『청사일기(淸沙日記)』가 남겨져 있는데 당시의 사회, 경제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그의 묘는 청풍(淸風) 김씨의 묘역인 남동구 운영동에 있다.

김정렬(金正烈 1907~1974) 소래(蘇萊) 태생으로 1933년 보성전문(普成專門) 법과를 졸업했다. 1945년 광복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원 판사를 역임했고, 1950년에는 인천지원장(仁川支院長)과 부장판사로 승진하였다.

법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1954년 제2대 민선 인천시장에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재임 중 인천체육회장과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시위원장을 역임, 체육 발전과 문예 진흥에 많은 공헌을 했다. 곧이어 제3대 민선 인천시장에 무투표로 당선되어 국내 유일의 무투표 당선 시장이 되었다.

4·19 의거 후, 제2공화국 심계원(審計院) 차장에 선임되기도 하였다. 1967년 인천에서 민정당(民政黨)으로 출마하여 제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74년 67세로 작고할 때까지 변호사로서 활동하였다.

김정식(1921~1998)

1989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정악대금(영산회상)’의 기능보유자이다.

김정현(金正顯 미상) 1923년~1924년, 1926년~1928년에 걸쳐 남동면장을 지냈다. 1922년 10월 학교가 없는 면내에 교육기관 설립을 취지로 남동면학교기성회(南洞面學校期成會)를 조직하여 3년에 걸쳐 모금 운동을 펴는 등 학교 설립의 토대를 만들었다.

김종희(金鍾喜 1922~1981) 호는 현암(玄巖)이고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다. 1937년 경기상업학교에 입학하였다. 일본인 학생을 구타하여 퇴학당하고 원산상업학교로 전학하였다. 1941년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상과 2년을 중퇴하고 조선화약공판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1952년 한국화약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56년 남동 소재 인천화약공장을 복구하여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하였다. 1964년 한국베어링공업주식회사, 1966년에는 골든벨상사주식회사와 한국화성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를 비롯해 재단법인 백암문화재단과 경인에너지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대한사격연맹 부회장, 제일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를 지냈다.

1973년 대일유업주식회사, 태평양건설주식회사, 태평개발주식회사, 김포요업주식회사를 잇따라 설립하였고, 1975년에 천안 북일학원 이사장이 되었다. 1976년 서울프라자 호텔과 제일증권(주)을 설립하였고, 1977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되었다.

이밖에 1967년 주한 그리스 총영사에 취임했고, 1972년 그리스 금성십자대훈장(金星十字大勳章)을 받았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되었다. 1981년에 금탑산업훈장이 추서되었다.

김혁환(金赫煥 1907 ~ 1967) 만수동에서 출신으로 인천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만수초등학교 육성회장을 역임했으며, 그의 장례 때 만수초등학교 학생들이 일렬로 배열하여 고인의 상여를 배웅했다고 전해진다. 서창동에 안장되었다.

김홍섭(金弘燮 1866 ~ 1915) 만수동에서 출생했다. 자(字)는 홍섭(弘燮)이며 족보명은 동약(東岳)으로 정삼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벼슬을 지냈다. 서창동에 안장되었다. 김혁환의 백부이다.

민길훈(閔吉勳 미상) 1922년 10월에 조직한 남동면학교기성회(南洞面學校期成會) 고문을 맡았다.

민선훈(閔善勳 1852 ~ 1929) 민중항의 아들로 민중항이 참수당할 당시 17세였는데 밤중에 부모의 시신을 운구하여 현 논현초등학교 부근에 가매장하고 서울 민승호의 집으로 피신하였다고 한다.

이후 민선훈은 문과에 급제하여 1881년 인천부 감리로 부임(인천시사에는 그가 감리였던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하여 사유지였던 중구 답동 언덕의 3,212평의 부지를 단돈 25냥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넘겨 답동성당 건축에 공헌하였다.

1901년 중추원 의관으로 있다가 1904년에 낙향, 부모가 순교한 곳 가까운 고잔동 괴화마을에 정착하였다. 이후 신앙 전파에만 주력하여 고잔 공소가 생기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민중항(민중항 1824 ~ 1867) 천주교 신자로 충청도 직산에 거주하다가 부인, 아들 민선훈(閔善勳)과 함께 1866년 병인박해를 피해 평택을 거쳐 호구포 부근으로 이주했다. 여기서 비밀리에 기도 생활을 하며 2년여를 지내다가 1868년 발각돼 체포되었고, 조동면 새별부락(현 만수동)에서 부부가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민중식(閔種植) 고종 말엽, 인천 고잔동에 거주하였다. 재산이 많아 부유하게 생활을 하였는데 같은 인천사람 이승훈의 감

화로 천주교를 신봉하게 되었다. 당시 대원군은 천주교를 사교로 여기고 탄압하였다. 그때 민중식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천주교를 믿고 있었는데, 어느 누가 이 사실을 관에 밀고하여 그의 부처는 인천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인천부사는 상부의 명령으로 민중식부처를 사형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그들 두 사람의 사형 집행장은 조동면 새필마을(지금의 만수동)에 마련되었다. 불과 17세의 어린 소년인 그의 아들 민선훈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부모의 시신을 운구해 가서 지금의 논현동 호구포 오봉산 선영에 매장하였다.>

박교문(朴敎文 미상) 1922년 10월에 조직된 남동면학교기성회(南洞面學校期成會) 총무를 맡았다.

박교인(朴敎仁 미상) 1935년 남동면협의회에 임명되었다.

박교헌(朴敎憲 미상) 1919년부터 1922년까지 남동면장을 지냈다. 1922년 10월에 조직된 남동면학교기성회(南洞面學校期成會) 부회장이었다.

박두성(朴斗星 1888~1963) 강화 교동 태생으로 교동봉산의숙(喬桐鳳山義塾)을 졸업하고 1906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 어의동보통학교(於義洞普通學校 : 후의 孝悌普通學校)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1913년 제생원 맹아부(濟生院 盲啞部 : 서울맹학교의 전신) 교사로 자리를 옮겨, 맹인 교육에 전념하면서 일어(日語) 점자(點字) 교육에 회의를 느껴 1923년 1월 비밀리에 ‘조선 어점자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7년간의 연구를 거쳐 1929년에 이른바 훈맹정음(訓盲正音)이라는 이름의 한글 점자를 완성하였다.

이어 한글 점자로 「조선어독본(朝鮮語讀本)」을 출판하였으며, 1935년 부면협의회(府面協議員) 선거에서 처음으로 한글 점자로도 투표가 실시되어 맹인들의 사회 참여가 가능해졌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점자 사용 승인을 받았다.

1941년 점자 「신약성서(新約聖書)」를 완성하였으며, 맹인의 자활과 사회적 역할에 강한 열의를 갖고 의학, 복술학(卜術學), 안마, 지압에 이르기까지 76종류의 맹인용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급시켰다. 우리나라 맹인들의 아버지로 추앙받아 서울맹학교 교정에는 ‘박두성 한글 점자찬양기념비(點字讚仰紀念碑)’가 세워졌다. 그의 묘소는 남동구 수산동에 있다.

박용균(朴容均 미상) 1924년 4월 1일 경기도평의회(京畿道評議會) 부천군 대표로 임명되었다.

박유환(朴有煥 미상) 1935년 남동면협 의원에 선출되었다.

소인식(1911~2000)

1992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주대소리’의 기능보유자다.

송국준(宋國準 미상) 호는 서방(書肪)으로 조선 인조 때 사람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올라 예조정랑(예조정랑), 종친부(宗親府) 전첨(典籤)을 지낸 뒤 1597년경 부평부사를 지내고 이어 포천군수, 直講, 典籍, 宣傳官, 양양부사 등을 지냈다. 한때 인천 **수산동**에 낙향하여 살면서 서방집(書肪集)을 펴냈는데 부평지방의 시문(時文)이 수록되어 있다.

송성용(宋聖用 1883 ~ 1934) 남동면 서창리 출신이다. 1919년 3·1운동 당시 남동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 1919년 3월 31일 서창리 송윤중(宋潤中)의 집에서 오창조(吳昌祖)에게 “4월 1일 길천시장(蛭川市場)에 주민들을 모아 독립만세를 외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작성케 한 후 김춘근(金春根), 윤영택(尹永澤), 박중일(朴中一) 등고 의논하여 그 통지문을 마을의 구장들에게 배부토록 했다가 체포되어 그 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감형되어 1년 간 복역했다. 1990년 건국훈장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송영만(宋榮萬 미상) 1922년 10월에 조직된 남동면학교기성회(南洞面學校期成會)에 오학섭(吳鶴燮)과 공동으로 재무위원을 맡았다.

신정희(申正熙 1833 ~ 1895) 어영대장 1881년(고종 18) 서해안 방어를 위해 인천과 부평 해안에 포대를 만들 때 강화유수 이경하와 함께 남동구에 논현포대를 건설하였다.

심만택(沈萬澤 미상) 1927년 인천청년동맹 등에서 활동한 사회주의 운동가로 1931년 7월에는 국제적색노동조합(國際赤色勞動組合) 사건으로 검거된 바 있다 1935년 남동면 발산리 농촌진흥회 야학교사인 최춘문(崔春文)과 함께 농민운동을 벌이다 1936년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오동섭(吳東燮 미상) 1935년 남동면협 의원에 선출되었다.

오재협(吳在協 미상) 고잔리 사람으로 동일에 아동교육기관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아동 80여 명을 주야학으로 나누어 자기 집에서 교육시킨 교육 ehrw지가로 알려졌다.

오학섭(吳鶴燮 미상) 1922년 10월에 조직한 남동면학교기성회(南洞面學校期成會) 재무담당이었다.

오혁근(吳赫根 미상) 만수동 담배고개 인근 구석말에 거주했다. 1922년 10월에 조직된 남동면학교기성회(南洞面學校期成會)에 박교문(朴敎文)과 함께 총무를 맡았었다. 1929년부터 1939년까지 남동면장을 지내고, 1952년 초대 인천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오화섭의 부친이다.

오화섭(吳華燮 1916 ~ 1979) 영문학자였다. 만수동 출신으로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고 1929년 소래공립보통학교를 나와 인천상업학교를 졸업했다. 1936년 그의 문학적 소양을 엿본 부친이 권유해 일본에 유학해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했다.

1940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이어 대단한 열성으로 1941년 대학원 과정까지 수료하고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고향으로 돌아와 집안 농장에서 독서를 하며 은거하였다. 광복 이듬해 서울로 올라가 고려대학교 영문과 부교수직을 맡아 1950년 6·25전쟁 때까지 재직하였다. 수복 직후에는 모교인 인천고등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다가 1952년 부산 대학 부교수를 거쳐, 1953년 연세대학 문과대학 교수로 전임하였다.

1953년 극단 <테아뜨르 리브르>, <연희극예술회>, 극단 <산하(山河)> 등의 창립에도 관여하면서 한국 극예술 발전에 공헌하였다. 1960년 연극협의회(演劇協議會)를 결성하고 의장이 되었고, 1962년에 번역문학상을 수상하였다. 1963년 영어영문학회장과 한국 셰익스피어협회 이사직을 맡으며 학술연구와 셰익스피어 연극의 한국 소개에도 힘썼다. 1970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장에 취임하였고, 1975년에 같은 대학 교육대학원장이 되었다.

그는 와세다 대학 시절 대학 오케스트라 단원으로도 활동했고, 1946년에는 현제명(玄濟明)이 주도한 고려교향악단의 창단 멤버로도 활약하는 등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인물로서 많은 음악 평론을 발표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현대 미국극』이 있고, 번역 회곡 『우리 읍내』 『밤으로의 긴 여로(旅路)』 『우리동물원』 『베니스의 상인』 등과 수필집 『물같이 와서 바람같이 가다』 『이 조그마한 정열을』 등이 있다.

1948년 광복 후 유일한 여성극단 「여인소극장(女人小劇場)」을 창단한 박노경(朴魯慶)이 그의 전 부인으로 1950년 폭사(爆死)했다.

윤길수(윤길수 미상) 1935년 남동면협 의원에 선출되었다.

윤동규(尹東奎: 1695~1773)

한국의 대표적 명문거족(名門鉅族)인 파평윤씨(坡平尹氏) 집안의 인물로 세조(世祖)의 장인 윤번(尹璠: 1384~1448)이 13대조이며, 중종(中宗)의 장인 윤지임(尹之任)이 9대조가 된다. 자가 유장(幼章), 호가 소남(邵南)인데 이는 인천의 옛 명칭인 ‘소성(邵城)’과 인천에서의 거주지인 ‘남촌(南村)’에서 한 자씩 따온 것이다. 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조선 후기 인천 출신의 대표적 유학자라 하겠다.

1695년(숙종 21) 11월 25일 한성부 용산방(龍山坊)에서 태어난 윤동규는 17세 때인 1711년에 ‘실학(實學)’의 거두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선생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으며, 스승이 그러했듯이 그 또한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초야에 묻혀 평생을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윤동규에 대한 현재 학계의 연구 실적은 매우 적어, 79년의 인생 역정(歷程)을 거친 윤동규의 행적 및 성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는 쉽지 않다. 성호 선생 밑에서 동문(同門)한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이 쓴 행장(行狀)과 제문(祭文)을 통해 일부나마 그의 행적과 성품을 살필 수 있다.

한편, 윤동규가 용산에서 인천의 남촌면 지역으로 이주한 시기는 정확치 않으나, 간찰(簡札) 자료에 따르면 1721년 이전임은 분명하다. 만년에 다시 용산으로 이주했다가 1773년(영조 49) 8월 7일 향년 79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시신은 인천 선영에 모셔졌다.<임학성 교수 · ‘조선시대 남동구의 명족’ 발췌>

윤동벽(尹東璧)

1754년(영조 30) 진사시에 합격했다.

윤석영(尹錫泳)

1827년(순조 27) 진사시에 합격하고, 1834년(순조 34) 식년시에 급제했다.

윤원석(尹元錫 미상) 1935년 남동면협 의원에 선출되었다.

윤응섭(尹應燮)

1852년(철종 3) 진사시에 합격했다.

윤취리(尹就履)

1679년(숙종 5) 진사시에 합격했다.

윤취빙(尹就聘)

1679년(숙종 5) 생원시에 합격했다.

윤취일(尹就一)

1723년(경종 3) 생원시에 합격했다.

윤취함(尹就咸)

1713년(숙종 39) 증광시에 급제했다.

윤탁영(尹鐸泳)

1827년(순조 27) 생원시와 진사시 양 시험에 모두 합격했다.

윤태영(尹台永 미상) 1935년 남동면협 의원에 선출되었다.

윤희수(尹海壽)

1679년(숙종 5) 생원시에 합격했다.

이경(李垞)

1662년(현종 3) 생원시에 합격했다.

이경하(李景夏 1811 ~ 1891) 강화유수로 1881년(고종 18) 서해안 방어를 위해 인천과 부평 해안에 포대를 만들 때 신정희와 함께 남동구에도 논현포대를 건설하였다.

이광부(李光溥)

1715년(숙종 41) 식년시에 급제했다.

이광식(李光湜)

1717년(숙종 43) 식년시에 급제했다.

이구(李渠)

1681년(숙종 7) 생원시에 합격했다.

이덕천(1909~1980)

남동구 지역 유지로 1978년 만수동 소재의 땅 31.4평방미터를 남동농업협동조합 (구)만수 지점 부지로 회사해 남동농협조합 발전에 기여했다. 같은 해 서창동에 궁도 회관 ‘남수정’을 건립하는 데도 물심양면 기여했으며 후에 사두를 지냈다. 1980년 별세했다. 2003년 남동구농업협동조합에서 ‘고인의 깊은 뜻과 공로를 기리고자’ 남동농협 사옥 전면에 흉상을 세웠다.

이명규(李明奎 1886~?) 주안면(朱安面) 간촌리(間村里)에 거주했다. 4,5세 때에 한학을 공부하다가 1902년 사범학교를 거쳐 1903년 인천항일어학교(仁川港日語學校)와 인천항영어학교(仁川港英語學校)에서 수업했다.

1904년 12월 의효전충의(懿孝殿忠義)에 임명되고 1905년 인산별단중(因山別單中), 같은 해 대선별단중(大禪別單中), 1906년 재기별단중(再基祭別單中) 전작례별단중(奠酌禮別單中), 영호전령(永禧殿令)과 장릉령(章陵令) 등을 지냈다.

이배(李培)

1662년(현종 3) 진사시에 합격했다.

이숙(李淑 1574~1628) 호는 만취당(晩翠堂)으로 만수동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재질을 보였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사헌부 감찰 등 여러 벼슬을 지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내시교관(內侍敎官)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였다.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광해군이 물러난 뒤 김장생(金長生)의 천거로 인조가 벼슬을 내렸으나 사양한 채, 인천 송림리 만취당에서 오직 후학 양성에만 진력하였다.

이승훈(李承薰 1756~1801) 호는 만천(蔓川)이고 세례명은 베드로로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우리나라 천주교 사상 최초의 세례자이다. 어머니는 조선시대 저명한 실학자인 이익(李穡)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인은 실학의 태두 정약용(丁若鏞)의 누이이다.

1780년(정조4)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전심하다가 이벽(李蘖)을 만나 천주교에 심취했고, 1783년 동지사(冬至使) 서장관(書狀官)인 부친을 따라 청나라에 가서 교리 공부를 하고, 예수회의 루이 드 그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천주교 탄압으로 몇 번에 걸쳐 체포와 배교(背敎)를 되풀이하다 1801년 신유박해(辛酉迫害) 때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되었다.

1866년 아들인 이신규(李身逵)와 손자인 이재의(李在誼)가 그 뒤를 따라 순교했고, 1871년엔 증손자 이연구(李蓮龜), 이균구(李筠龜)가 각각 순교해 4대에 걸쳐 순교자를 낸 집안이 되었다.

그의 시신은 선대까지 세거지였던 반주골(남동구 장수동)에 묻혔는데 그의 묘는 1957년에야 확인되었고 1968년에 비석이 세워졌다. 1981년 11월 한국 가톨릭 성지인 경기도 광주군 천진암(天真庵)으로 이장되어 현재는 비석과 터만 남았다.

이신규(李身逵 ?~1866) 이재의(李在誼 ?~1866) 이연구(李蓮龜 ?~1871) 이균구(李筠龜 ?~1871) 이신규는 이승훈의 아들이고 이재의는 손자다. 이들은 1866년 병인양요 이후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진 가운데서도 비밀리에 포교 활동을 하다가 잡혀 서울 서소문에서 참수형을 당하였다.

이연구, 이적구 형제는 이승훈의 증손자로 신미양요 때 서해안에 정박중이던 미국 함대에 들어가 우리나라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발각되어 제물포에서 처형되었다. 이들 순교자들은 고향인 장수동 초곡산에 나란히 묻혀 있다.

이여발(李汝發 1621~1683) 호는 양성(仰城), 시호는 정익(貞翼)이다. 1651년(효종 2) 무과에 급제하고, 비변랑(備邊郎), 도총사(都摠事)를 거쳐 숙천(肅川)부사를 지냈다. 그의 선정을 기려 거사비(去思碑)라는 송덕비가 세워졌다.

충청병마절도사(忠淸兵馬節度使)를 거쳐 회령부사(會寧府使)에 발탁되어 가선(嘉善大夫)에 오르고 한흥군(韓興君)에 봉해졌다.

현종 때 병조, 공조 참판에 오르고, 평안도병마절도사가 되어 성을 수축하고 군사 훈련과 병기의 정비에 힘써 북방 경비를 튼튼히 하였다. 그 뒤 훈련대장 이완(李浣)이 면직되자 상국(相國) 정태화(鄭太和)의 천거로 그 후임이 되었으며, 이어 어영대장, 한성부의 좌윤, 우윤, 비변사제조, 포도대장, 총융사, 수원부사 등을 지내고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라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었다.

과묵하고 웃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으며, 사줄을 따듯이 위무하고 제교(諸校)를 예의로 대하였으므로 모두 그 덕을 우러러 그에게 충실하였다. 정태화·여성재(呂聖齋) 등과 가까이 지냈다. 이여발의 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한산이씨 정익공파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영만(1913~2000)

1985년 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삼현육각(三絃六角)’의 기능보유자이다.

이재겸(李在謙)

1858년(철종 9) 진사시에 합격했다.

이재동(李在東 미상) 1924년 11월 김명동(金命童)과 구월리에 보급강습소(普及講習所)라는 사설 교육시설을 세우고 주야반 30여 명의 아동들을 지도하였다.

이찬(이찬 미상) 평생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며 살았다. 남동에 그의 자선비(慈善碑)가 있다.

이창현(李昌炫)

1651년(효종 2) 정시에 급제했다.

이태석(李泰錫)

1691년(숙종 17) 생원시에 합격하고, 1693년(숙종 19) 식년시에 급제했다.

이형석(李亨錫)

1681년(숙종 7) 생원시에 합격했다.

이희문(李希文 1580~1612) 과천, 양양, 강화 안산, 광주 등 여러 고을의 원을 지내고 후에 제용감(濟用監) 정(正)을 지냈다. 그의 묘가 만수동 초곡(草谷)에 있는데 비문을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이 썼다.

장명덕(張明德 1901~1990) 소래면 무지리에서 태어났다. 1914년 인천영화여자소학교 5학년에 편입했다. 졸업 후 결혼하여 딸을 하나 두었다. 1922년 오빠 장기진의 권유로 협성여자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한 후 서울 상동교회 전도사로 있었다. 이후 수원 삼일여학교 성경교사를 거쳐, 안산의 천곡교회, 반월교회, 둔대교회, 초지교회, 야목교회 등에서 교사와 전도 활동을 폈다.

신학교 후배이자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 채영신의 실존 인물인 최용신(崔容信)을 도와 1935년 최용신이 사망할 때까지 보살피며 천곡학원을 크게 성장시키는 등 일생을 전도와 교육 봉사에 바쳤다.

조정만(趙正萬 1658~1739) 본관은 임천(林川)이며 자는 정이(定而), 호는 오재(猷齋)이다. 군수 조정망(趙景望)의 아들로 송준길(宋浚吉) 문하에서 수학하여 송시열의 문인이 되었다. 1681년(숙종 7) 진사시에 장원 급제하고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며, 이듬해에 성균관 유생들의 소두(疏頭)가 되어 윤증(尹拯)이 송시열을 배반한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 후 관직에 나아가 1689년(숙종 15)에 숙종 계비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위되자 많은 선비들과 더불어 복궐호읍(伏闕號泣)하고 도보로 사제까지 따라가서 통곡 배사(拜辭)한 후 벼슬을 버리고 6년 동안 두문불출하였다.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甲戌獄事)로 서인이 집권하고 인현왕후가 복귀되자 금오랑(金吾郎)에 제수되었으며 이어서 강서현령, 평양부윤, 광산현감, 안악군수, 청송부사, 성천부사, 나주, 능주, 청주, 양주, 상주목사 등 12읍의 부사를 역임하고서 장악원정(掌樂院正)이 되었다. 경종이 즉위하고 노론과 소론의 싸움에서 노론이 밀려난 신임사화(辛壬士禍)때 유배되었다가 영조 1725년(영조 1)에 풀려나 군자감정(軍資監正)이 되었다. 이듬해에 수원부사가 되고 후에 호조참의를 거쳐 호조참판에 오르고 특진관(特進官)으로 경연(經筵)에 참여하였다.

1735년(영조 11)에 80세의 나이로 자헌대부에 올라 지돈녕(知敦寧)과 공조, 형조판서를 역임하고 정헌대부에 올랐다. 1739년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그의 묘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 46-3에 있으며 이의현이 찬하고 김진상이 쓴 신도비가 있다. 인천시 지정 기념물 제7호이다.

차태열(車台悅 미상) 1920년대 경인기차통학생이었다. 1927년 9월 25일 인천청년연맹(仁川靑年聯盟)이 해체되고 그 후신으로 창립된 인천청년동맹(仁川靑年同盟)의 감사위원이었다. 1934년 1월 국제공산당에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1949년 11월에는 이흥선(李興善), 장광순(張光淳) 등과 함께 남로당 자금 조달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56년 제2대 지방의원 선거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본회의에서 부의장에 선출하였다. 이어 제3대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다시 한 번 부의장이 되었다.

간석동 542번지에 조선요업주식회사(朝鮮窯業株式會社)를 설립했다.

최윤(崔繭 미상) 해주 최씨로 알려졌다. 머리가 영특하여 어린 나이에 문과에 급제했으며 안협현감을 지내기도 하였다. 말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논현동에 낙향하였다. 그의 자손들이 아직도 논현동에 집단으로 살고 있다. 그의 무덤은 논현동 오봉산 남쪽마을 뒤에 있다.

최정환(崔正煥 1917~1987) 시흥시 월곶동 출생이다. 경성전기공업학교를 졸업했다. 1946년 인천 동양방직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1950년까지 동양방직 노조에서 활동했다. 1970년 인천상공회의소 특정위원에 당선된 뒤 제7대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에 당선되었으며, 이후 1982년 10대에 이르기까지 회장을 지냈다.

상공회의소 회장 재임중이던 1976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仁川南洞國家産業團地) 유치 필요성을 정부에 진정, 역설하여 1980년 마침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으로부터 유치허가를 받았다. 남동공단은 1985년 착공하여 4년 뒤인 1989년 1단지가 준공되었다. 그는 오늘날 남동공단 건설의 산파역과 함께 경제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자유당 말기에는 인하공대 재단이사를 지냈고, 경기도야구협회 회장과 경기도체육회 부회장을 지내던 바 있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정치 입문을 꿈꾸었으나 김은하(金殷夏)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으며, 1972년에는 남동구에 신명여고를 설립하는 등 육영사업에도 기여했다.

최춘문(崔春文 1913~?) 부천공립보통학교와 1931년 인천공립상업보습학교를 나왔다. 발산리 농촌진흥회에서 경영하는 야학 교사로 심만택(沈萬澤)과 농촌진흥회에서 농민운동을 벌이고 공산주의 선전 등 불온사상을 전파하였다는 구실로 가택 수색을 당하고 취조를 받았다.

최치명(崔致明 미상) 1935년 남동면협 의원에 선출되었다.

하연악(河連岳 미상) 1935년 남동면협 의원에 선출되었다.

홍정희(洪正희 미상) 남동의 이름난 효자로 효자문이 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10-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운연동 소 1-2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07-57호(2007. 9.28)로 시설 결정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운연동 소로 1-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2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0. 2. 26.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 남동구 운연동 256-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시설의 종류			사 업 명
구 분	노선 번호	규 모	
도 로	소로 1-2호선	폭원(B)= 10m, 연장(L)=953m	운연동 순환도로(소1-2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만수6동 1008번지)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08. 3.14 ~ 2010.12.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용지 조서(변경 있음) : 붙임 “용지 조서” 참조

(2) 지장물 조서(변경 없음) : “계재 생략”

6.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있음) : 붙임 “용지 조서” 참조

7. 관계도서 : 계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용 지 조 서 (변경)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목	편 입 내 역			소 유 자 내 역		관 계 인	
		동 명	지 번		지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1	변경없음	운연동	256-2	대	78.0	78.0	-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55번지	서 영 진		
2	변경없음	운연동	506	도	5,510.0	159.0	5,351.0		국(건설부)		
3	변경없음	운연동	255-3	대	159.0	159.0	-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55번지	서 상 쇠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4	변경없음	운연동	255-2	대	90.0	90.0	-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55번지	서 상 쇠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5	변경없음	운연동	257-7	대	6.0	6.0	-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57-1번지	김 서 진		
6	변경없음	운연동	257-8	대	51.0	51.0	-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57번지	김 기 룰		
7	변경없음	운연동	252-4	대	79.0	79.0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139 사당엘지아파트103-803	이 석 기		
8	변경없음	운연동	산32-4	임	25.0	25.0	-	인천시 남구 주안동 285-27번지	박 형 연	유 미 숙	인천시 남구 주안동 285-27번지
9	변경없음	운연동	산32-5	임	80.0	80.0	-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45-7 경남아파트313-1102	한 부 선		

10	변경없음	운연동	258-6	대	54.0	54.0	-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58번지	참총만교회	영동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72번지
11	변경없음	운연동	산32-6	임	143.0	143.0	-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45-7 경남아파트313-1102	장 채 봉		
12	변경없음	운연동	산32-7	임	204.0	204.0	-	인천시 동구 송현동 66-26 동부아파트 3-1405	김 신 덕		
13	변경없음	운연동	산0-30	임							
14	변경없음	운연동	258-7	전	393.0	393.0	-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71-1번지	김 종 현		
15	변경없음	운연동	259-26	대	4.0	4.0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206-1503	김 경 철		
16	변경없음	운연동	259-25	임	37.0	37.0	-		인천시 남동구청		
17	변경없음	운연동	259-21	대	28.0	28.0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206-1503	김 경 철	한국씨티은행	서울시 중구 다동 39 (만수동지점)
18	변경없음	운연동	258-8	잡	31.0	31.0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5 대치2차우성아파트 201-1105	김 은 석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번지
19	변경없음	운연동	258-5	잡	3.0	3.0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5 대치2차우성아파트 201-1105	김 은 석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번지
20	변경없음	운연동	259-12	임	10.0	10.0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510-27 태화다세대주택1-지1	김 경 철외 1인	이 정 웅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62-4번지

21	변경없음	운연동	262-19	잡	10.0	10.0	-	인천 남동구 운연동 262-4	이 정 웅	인천원예농업 협동조합	인천 동구 송림동 51-71
22	변경없음	운연동	산0-31	임							
23	변경없음	운연동	258-11	창	257.0	257.0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5 대치2차우성아파트 202/703	김 은 석		
24	변경없음	운연동	262-20	잡	5.0	5.0	-	인천 남동구 운연동 262-4	이 정 웅		
25	변경없음	운연동	262-21	대	32.0	32.0	-	인천 남동구 운연동 415	하 봉 재		
26	변경없음	운연동	415-3	도	1.0	1.0	-	인천 남구 구월동 380	김 은 석		
27	변경없음	운연동	262-22	전	12.0	12.0	-	인천 남동구 운연동 415	하 봉 재 외 2인	인천축산업 현동조합	인천 남구 주안동 894-3
28	변경없음	운연동	산25-1	임	289.0	289.0	-		국(산림청)		
29	변경없음	운연동	415-2	대	12.0	12.0	-	인천 남동구 운연동 415	추 정 호		
30	변경없음	운연동	414-6	도	6.0	6.0	-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5 하나아파트 106/901	유 광 순	남동농협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31	변경없음	운연동	414-5	대	12.0	12.0	-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5 하나아파트 106/901	유 광 순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32	당초	운연동	411-3	도	28.0	23.0	5.0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6 럭키송도아파트 114/1701	김 정 개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32	변경	운연동	411-6	도	23.0	23.0	-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6 럭키송도아파트 114/1701	김 정 개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운연동	411-3	도	5.0	-	5.0				
33	당초	운연동	410-4	전	271.0	223.0	48.0	인천 남동구 운연동 271	김 종 현		
33	변경	운연동	410-22	전	221.0	221.0	-	인천 남동구 운연동 271	김 종 현		
		운연동	410-4		50.0	-	50.0				
34	변경없음	운연동	410-20	임	261.0	261.0	-	인천 서구 원당동 536	남 달 우 외 3인		
35	변경없음	운연동	410-21	도	15.0	15.0	-	인천 서구 원당동 536	남 달 우 외 3인		
36	변경없음	운연동	411-4	도	20.0	20.0	-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6 럭키송도아파트 114/1701	김 정 개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37	당초	운연동	411	대	862.0	18.0	844.0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6 럭키송도아파트 114/1701	김 정 개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37	변경	운연동	411-5	대	18.0	18.0	-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6 럭키송도아파트 114/1701	김 정 개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운연동	411	대	844.0	-	844.0				
38	변경없음	운연동	410-19	임	18.0	18.0	-	경남 창원시 성주동 101 일신대동프리빌리지 106/301	남 기 종 외 2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39	변경없음	운연동	410-18	대	3.0	3.0	-	경남 창원시 성주동 101 일신대동프리빌리지 106/301	남 기 종 외 2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40	변경없음	운연동	408-1	잡	3.0	3.0	-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4 목동신시가자아파트 806/802	김 천 곤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41	변경없음	운연동	412-1	잡	194.0	194.0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 꿈동산 1902/204	조 송 윤	노벨리스코리아 주식회사	경북 영주시 적성동 250
42	변경없음	운연동	423-1	전	305.0	305.0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 꿈동산 1902/204	한 영 호	노벨리스코리아 주식회사	경북 영주시 적성동 250
43	변경없음	운연동	521	도	3,362.0	333.0	3,029.0		국(건설부)		
44	변경없음	운연동	508	도	5,696.0	29.0	5,667.0		국(건설부)		
45	변경없음	운연동	407-3	도	19.0	19.0	-	인천 남구 주안동 1340-12	이 현 욱		
46	변경없음	운연동	407-2	대	21.0	21.0	-	인천 남구 송의동 438-157	이 순 자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47	변경없음	운연동	424-1	전	53.0	53.0	-	인천 남동구 운연동 261	백 철 호	서인천새마을금고	인천 서구 심곡동 333-5

48	변경없음	운연동	435-5	도	1.0	1.0	-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8 금호아파트 102/401	권 혁 구		
49	변경없음	운연동	435-6	창	107.0	107.0	-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8 금호아파트 102/401	권 혁 구		
50	변경없음	운연동	406-1	답	109.0	109.0	-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8 삼익세라믹아파트 102/402	박 귀 학		
51	변경없음	운연동	509	구	803.0	103.0	700.0		국(농림부)		
52	변경없음	운연동	405-1	전	181.0	181.0	-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8 삼익세라믹아파트 102/402	박 귀 학		
53	변경없음	운연동	403-1	답	1.0	1.0	-	인천 남동구 운연동 254	서 순 옥 외 10인		
54	변경없음	운연동	404-1	전	182.0	182.0	-	인천 서구 가좌동 122-2 현대아파트 301/1403	김 영 일	이 봉 순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6 대우아파트 107/503
55	변경없음	운연동	402-1	답	314.0	314.0	-	인천 남동구 만수동 983-1 삼환아파트 105/608	김 학 관		
56	변경없음	운연동	408-2	잡	1.0	1.0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31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06-802	김 천 곤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57	변경없음	운연동	409-1	도	46.0	31.0	15.0	인천 남동구 운연동 387-1	하 구 재		
58	변경없음	운연동	389-1	답	118.0	118.0	-	인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249	김 학 수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59	변경없음	운연동	383-1	답	730.0	730.0	-	인천 남동구 만수동 71-124	권 승 호 외 1인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60	변경없음	운연동	382-3	답	126.0	126.0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76-38 다가구주택 2층	박 길 동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61	변경없음	운연동	266-1	대	7.0	7.0	-	인천 남구 도화동 558-20	김 양 미	주식회사 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
62	변경없음	운연동	382-4	도	9.0	9.0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76-38 다가구주택 2층	박 길 동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63	변경없음	운연동	268-1	답	1,167.0	1,167.0	-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85번지	김 완 식		
64	변경없음	운연동	521	도	3,362.0	900.0	2,462.0		국(건설부)		
65	변경없음	운연동	271-6	대	9.0	9.0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314-108번지	김 진 영	박 소 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71-5번지
66	변경없음	운연동	510	구	5,062.0	674.0	4,388.0		국(농림부)		
67	변경없음	운연동	325-4	도	1.0	1.0	-	인천시 남구 학익동 261-12 번지	이 정 속		
68	변경없음	운연동	324-5	답	9.0	9.0	-	인천시 서구 가정동 341-15 하나아파트 101-1403	추만순외12인	국 (인천,남인천세무서)	
69	변경없음	운연동	324-4	답	12.0	12.0	-	인천시 서구 가정동 341-15 하나아파트 101-1403	추만순외12인	국 (인천,남인천세무서)	
70	변경없음	운연동	324-3	전	13.0	13.0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369번지	김 사 연		
71	변경없음	운연동	323-5	답	75.0	75.0	-		남동구청외 1인	김 석 철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78-98번지

당초	계	31,197.0	8,688.0	22,509.0				
변경	계	31,197.0	8,686.0	22,511.0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10-10호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10. 3. 2일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 첨 부 ”

2010. 2. 2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첨부】 장수서창동 통·반 구역조정 내역

구 분	조 정 전	조 정 후	비 고
통	24	25	1개통, 8개반 증가
반	115	123	

조 정 전		조 정 후			
1통 (745세대, 1949명)		1통 (406세대, 1174명)		25통 (339세대, 775명)	
1반	222세대(427명)	1반	40세대(106명)	1반	71세대(210명)
2반	504세대(1,473명)	2반	49세대(150명)	2반	72세대(121명)
3반	19세대(49명)	3반	42세대(135명)	3반	28세대(74명)
4반	0세대(0명)	4반	79세대(236명)	4반	81세대(183명)
		5반	73세대(213명)	5반	87세대(187명)
		6반	62세대(158명)		
		7반	61세대(176명)		

○ 통 · 반 구역조정 세부내역

연 영				조 정 후				비 고 (조정내역)
통	반	관 알 구 역	세대수 (인구수)	통	반	관 알 구 역	세대수 (인구수)	
1	1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42	222 (427)	1	1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번지 일원	40 (106)	○과밀통반 구역조정: 1통 2반 =>1통1반~ 1통7반
	2	543,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04 (1473)		2	574번지 일원	49 (150)	
	3	546, 547, 548, 50, 51, 52, 53, 54, 61, 62, 63, 64, 69, 71, 72, 73, 75	19 (49)		3	575번지 일원	42 (135)	
	4	567-4	-		4	572번지 일원	79 (236)	
					5	573번지 일원	73 (213)	
					6	570번지 일원	62 (158)	
					7	571번지 일원	61 (176)	

연 영				조 정 우				비 고 (조정내역)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인구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인구수)	
				25	1	50~56, 61~64, 69, 71~73, 75, 568 번지 일원	71 (210)	1통 2, 3반 일부를 25통 1반으로 조정
					2	543, 562, 563, 564, 565, 566, 567번지 일원	72 (121)	1통 1, 2, 4반 일부를 25통 2반으로 조정
					3	558, 559, 542번지 일원	28 (74)	1통 1반일부 를 25통 3반 으로 조정
					4	554, 555, 556, 557, 546, 547, 548, 549번지 일원	81 (183)	1통 1,3반 일부를 25통 4반 으로 조정
					5	550, 551, 552, 553번지 일원	87 (187)	1통 1반 일부를 25통 5반으로 조정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10-11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구월동 소3-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비관리청)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구월동 소3-3호선, 사업명: 구월동 소3-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032-453-299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02. 26.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구월동 소3-3호선 도로개설공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로 (소3-3호선)

(2) 명 칭 : 구월동 소3-3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폭(B)=6.0m, 연장(L)=83.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대한예수교 침례회 남인천교회 (대표: 오성균)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43-11번지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당 초 : 2008.08.29. ~ 2010.02.28.

- 변 경 : 2008.08.29. ~ 2011.02.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별첨」

7.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별첨」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